

원자력법 개정사항

1. 신고사용자에 대한 규제완화
 - 근거규정 : 제67조(검사), 제70조(안전관리규정), 제72조(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)
 - 종전 :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 등에 대하여 적용
 - 현행 : 허가사용자에 대하여 적용
2. 기록과 비치사항 조정
 - 근거규정 : 제69조(기록과 비치)
 - 종전 : RI/RG의 사용·보관·폐기 또는 판매 등에 관한 사항
 - 현행 : RI/RG의 사용·분배·저장·운반·폐기 또는 판매 등에 관한 사항
3. 역무제공업 등록(신설)
 - 근거규정 : 제75조의2(역무제공업의 등록)
 - 현행 : 원자력시설운영자외의 자로서 원자력관계시설의 관리구역에 상시출입하면서 방사능오염을 제거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수거·처리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제공업 신설
4. 판독에 관한 검사
 - 근거규정 : 제90조의6(검사)
 - 종전 :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지의 여부 검사
 - 현행 : 판독업무 등에 대한 검사
5. 판독취급책임자 등의 의무(신설)
 - 근거규정 : 제90조의10(판독취급책임자등의 의무)
 - 현행
 - 1) 판독취급책임자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
 - 2) 판독업무 종사자는 판독취급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
6. 판독취급책임자의 해임(신설)
 - 근거규정 : 제90조의11(판독취급책임자의 해임)
 - 현행
 - 1) 과학기술처장관은 판독취급책임자가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에 대하여 그 판독취급책임자를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음
 - 2) 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가 위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판독취급책임자를 해임하고 판독취급책임자를 새로이 선임하되,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
7.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 - 근거규정 : 제94조(면허시험)
 - 현행 :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8. 도난 등의 신고대상 조정
 - 근거규정 : 제102조(도난등의 신고)
 - 종전 :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·분실·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
 - 현행 :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·분실·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
9. 부 칙
 - 근거규정 : 제4조(사실상 역무를 제공하던 자에 관한 경과조치)
 - 종전에 제75조2의 규정에 의한 역무에 해당하는 종류의 역무를 사실상 제공하던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해야 함.